

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

제1.1조 목적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품, 서비스, 설립 및 관련 규칙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.
2.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 - 가.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(이하 “1994년도 GATT”라 한다)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
 - 나.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(이하 “GATS”라 한다)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
 - 다. 당사국의 경제에서 경쟁,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
 - 라. 양 당사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
 - 마. 지식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
 - 바.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
 - 사.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하에,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, 그리고
 - 아. 양 당사국의 환경 및 노동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환경,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

제1.2조 일반정의

이 협정 전반에 걸쳐, 아래 언급은 다음을 말한다.

양 당사국이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,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을 말한다. 그리고

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란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「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」을 말한다.

제1.3조

법령 언급

1. 이 협정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법령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또는 대체되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. 다만, 그러한 개정 또는 대체는 양 당사국 간 시장접근을 감소시키거나 무역장벽을 높이지 아니하여야 한다.¹
2. 제1항의 목적상, 유럽연합 법령은 영국이 관련된 유럽연합 법령에 대해 구속 받는 것이 중단되는 다음 날에, 영국법으로 통합되었거나 이행되어 유효한 그 유럽연합 법령으로 대체된다.
3. 유럽연합 법령에 대한 언급이 제15.15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영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까지 확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있는 경우, 제2항의 “영국법”은 그러한 영역의 법을 포함한다.
4. 영국 법령에 대한 언급이 제15.15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영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까지 확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있는 경우, 그러한 영국 법령에 대한 언급은 그 영역에 대하여 그 영역의 상응하는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.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단지 영국이 유럽연합의 내부 시장에 참여한 결과로 한국에 부여하고 있었던 대우의 철회는 양 당사국 간 시장접근 감소 또는 무역장벽 증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.